



---

#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2023. 6.

부 천 시  
(감 사 담 당 관)

# || 목 차 ||

|                             |          |
|-----------------------------|----------|
| I. 감사개요 .....               | 3        |
| II. 감사결과 .....              | 4        |
|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 7        |
| <b>[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 .....</b> | <b>9</b> |

# I

## 감사개요

### 1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시가 출연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로 기관운영의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함.

### 2

####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진흥원에서 수행(2021. 9. 1.부터 2023. 3. 31.까지)한 업무 처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조직·인사, 예산·회계, 위·수탁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3

#### 감사실시 과정

- 실지감사에 앞서 진흥원의 업무계획, 경영평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타 기관 감사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사전감사(2023. 3. 20. ~ 3. 31.)를 거쳐 2023. 4. 3. ~ 4. 14.까지 10일간 외부전문가 3명(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을 포함한 12명의 감사인원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 4

#### 감사결과 처리

- (감사마감회의)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실지감사 종료일인 2023. 4. 14. 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처분심의) 감사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처분심의(2023. 5. 26.)와 외부위원이 참여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2023. 6. 1. ~ 6. 2. 서면심의)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음.

## II

# 감사결과

### 1

##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 23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32건 조치

◆ 신분상 조치: 11건 / 15명 (문책 4, 훈계 5, 주의 6)

◆ 기 타 조 치: 21건 / 시정 1, 주의 10, 개선 3, 권고 1, 통보 6

### 2

## 총 평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998. 11. 16.에 설립되어 만화도시 부천 브랜드 구축,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 만화생태계 다양성 확대, 즐기는 만화문화 확산, 웹툰 글로벌 산업화 교두보 구축 등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문화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로 부천형 만화 중심도시 구축, 웹툰 창작체험관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수출작품 번역지원, 한국만화 해외 전시 및 교류로 시장 확대 및 수요창출,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웹툰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일상 속 만화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경영평가 등급은 2020년(2019년 실적)부터 3년 연속 “나” 등급을 달성하였으나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사업성과 달성률이 저조함.

### 2. 이번 종합감사는

- 진흥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인사·조직, 예산·회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하되, 조직 내부 운영업무를 점검하였고, 만화영상산업 진흥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하는 등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총 23개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타사항으로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등 21건을 조치하였음.
-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 ▶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투자성과 분배금 운용 방안 마련에 대해 감사기간 중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 완료하게 함에 따라 이자수익을 발굴하였고
  - ▶ 박물관자료 구입 관련하여 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징계·훈계 처분 등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개선 요구하였고
  - ▶ 직원의 성과연봉과 경영평가 결과의 연계 필요성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업무처리 소홀, 유급휴가 및 경조사 휴가 등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산정 부적정 등 문제점을 확인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 ▶ 박물관자료 수집 업무,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신분상 책임을 묻기로 하였음.

### 3.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 박물관자료 구입 업무절차에 대하여는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금액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만화박물관 운영 규칙 개정이 필요함
- 인사·조직·노무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의 보수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징계 및 훈계 처분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계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과 시간외 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문화콘텐츠투자 조합의 투자성과 분배금 운용방안은 지적내용에 따라 정기에금에 가입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천시 재정지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

## 주요 개선과제

### 1. 효율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박물관 규정 개선 방안 마련

#### 가. 박물관자료 수집 업무 부당 처리

- 박물관자료 구입 시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금액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

### 2.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 개정 및 방안 마련

#### 가. 직원의 성과연봉과 경영평가 결과의 연계 필요

- 직원의 보수(성과연봉)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 체계 개편방안 마련

#### 나. 징계 및 훈계처분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징계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에 대하여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 유급휴가 및 경조사 휴가 등 운영 부적정

-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도록 취업규정 개정 및 타 기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조사 휴가일수 개편 방안 마련

### 3. 세입증대방안 마련 및 관행적인 업무처리 개선

#### 가.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투자성과 분배금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참고

####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업무 처리 소홀

- 협상에 의한 업무가 공정하고 통일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운영규정 마련

### 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 지적사항 총괄 현황

(단위: 개, 건, 명)

| 합 계                    |                   |                   |          | 변상<br>(금액) | 문책<br>(인원) | 주의<br>(인원)          | 시정(금액) |    |         | 기타조치 |    |    |    |    |
|------------------------|-------------------|-------------------|----------|------------|------------|---------------------|--------|----|---------|------|----|----|----|----|
| 지적<br>사항<br>(조치<br>건수) | 신분상<br>조치<br>(인원) | 재정상<br>조치<br>(금액) | 기타<br>조치 |            |            |                     | 소계     | 회수 | 부과<br>등 | 시정   | 주의 | 개선 | 권고 | 통보 |
| 23<br>(32)             | 11<br>(15)        | -                 | 21       | -          | 2<br>(4)   | 9<br>(훈계 5<br>주의 6) | -      | -  | -       | 1    | 10 | 3  | 1  | 6  |

### 2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 처분<br>요구<br>번호 | 건 명                               | 수감기관            | 처 분 요 구        |                      |             |
|----------------|-----------------------------------|-----------------|----------------|----------------------|-------------|
|                |                                   |                 | 처분종류           | 신분상<br>조치인원          | 재정상<br>조치금액 |
| 계              | 총 23개                             |                 | 32건            | 문책 4<br>훈계 5<br>주의 6 |             |
| 1              | 박물관자료 수집 업무 부당 처리 <sup>1)</sup>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문책<br>주의<br>개선 | 문책 ○<br>훈계 ○         |             |
| 2              |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문책<br>주의       | 문책 ○<br>훈계 ○         |             |
| 3              | 직원의 성과연봉과 경영평가 결과의 연계 필요          | ●과<br>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br>통보       |                      |             |
| 4              |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운영 부적정              | ●과<br>한국만화영상진흥원 | 통보<br>통보       |                      |             |
| 5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당 분리발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훈계 ○<br>주의 ○         |             |
| 6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 ★★상 추천 후보자 심의 누락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주의 ○                 |             |
| 7              |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투자성과 분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통보<br>(시정완료)   |                      |             |
| 8              | 징계 및 훈계처분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개선             |                      |             |

| 처분<br>요구<br>번호 | 건<br>명                              | 수감기관      | 처 분 요 구  |             |             |
|----------------|-------------------------------------|-----------|----------|-------------|-------------|
|                |                                     |           | 처분종류     | 신분상<br>조치인원 | 재정상<br>조치금액 |
| 9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br>구성 업무 처리 소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br>통보 |             |             |
| 10             | 경영평가 실적 보고자료 작성 및<br>제출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 11             | 계약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br>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주의 ○        |             |
| 12             | 유학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훈계 ○        |             |
| 13             |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제외 대상<br>관련 규정 정비 필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개선       |             |             |
| 14             | 유급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운영<br>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통보       |             |             |
| 15             |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br>권고 |             |             |
| 16             |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산정<br>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시정       |             |             |
| 17             | 자체감사제도 운영 소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 18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후관리 소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주의 ○        |             |
| 19             | 부천만화대상 수상 부문 변경<br>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 20             | 기부금품 모집 · 운영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 21             | ☒☒ 교육강사 선정 업무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주의 ○        |             |
| 22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 23             | 재단 회계 결산 처리 미흡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주의       |             |             |

1) 재심의신청(2023. 6. 28.)이 접수되어 감사결과 공개일 현재(2023. 7. 10.) 처리 중에 있음

[별첨]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감사담당관

# 부 천 시

## 문책 · 주의(훈계) 및 개선요구

제 목 : 박물관자료 수집 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재심의 신청 건으로 재심의 완료 후 추후 공개”

# 부 천 시

## 문책 및 주의(훈계)요구

제 목 :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진흥원은 감사대상 기간(2021. 9월 ~ 2023. 3월) 중 2021년 ☐ 용역 등 28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정성평가 합계점수의 산정을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정성평가의 득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정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 용역’의 경우 [표 1]과 같이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위원별 합계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성평가 합계점수를 산정하는 등<sup>2)</sup>의 방식으로 [별표] “제안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부적정 현황” 과 같이 감사대상 기간 중 추진한 협상에 의한 계약 28건 모두에 대하여 정성평가 합계 점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표 1] 제안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오류 예시 “생략”

## 2.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 용역’ 과 ‘ 용역’ 에 대하여 각각 2021. 9. 8., 2022. 2. 28. 입찰공고하면서 [표 2], [표 3]과 같이 평가항목을 안내하였으며,

2) 이로 인해 협상순위의 변경은 없었음 다만, 정성평가 합계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과 별개로  용역과  용역의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등을 잘못 적용하여 협상적격자가 없는데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계약체결하였음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정량평가 + 정성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로 하고, 제안서 제출 시 회사인지(업체명, 대표자, 실적 등) 표기 위반의 경우 정성평가에서 5점을 감점한다고 명시하였다.

[표 2] ‘㉠ 용역’ 평가항목 “생략”

[표 3] ‘㉡ 용역’ 평가항목 “생략”

그런데 ㉠ 용역의 경우 [표 4]와 같이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2개 업체 모두 회사인지 표기위반 등으로 5점을 감점받았으나, 진흥원은 정성평가 최종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지 않고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에서 5점 감점을 하고 산술평균함에 따라 업체①의 기술능력평가점수를 74점, 업체②의 기술능력평가점수를 77.88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실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업체①은 70점, 업체②는 73.88점으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가 되지 않아 협상적격자가 없는데도 업체②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 용역’ 관련 적격 여부 재검토 결과 “생략”

또한 ㉡ 용역의 경우 [표 5]와 같이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 모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업체① 65.25점, 업체② 71.75점으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가 되지 않아 협상적격자가 없는데도, 진흥원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로 착오 판단하여 합계점수가 81.75점으로 가장 높은 업체②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상적격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5] ‘㉡ 용역’ 관련 적격 여부 재검토 결과 “생략”

### 3.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진흥원 ■팀 K는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담당자로서 ●팀 L은 2022. 1. 1.부터 2023. 4. 14. 현재까지 담당자로서,진흥원 위 직에서 각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및 결과보고,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가. K의 경우

##### 1)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부적정(“1항” 관련)

K는 2020. 1. 1.부터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대상기간 중 ‘**㉠** 용역’ 등 6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직접 실시하였다.

그리고 K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가격평가 및 정량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공고에 평가항목별 점수산정기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K는 공고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방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성평가 점수산정을 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협상적격자나 협상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담당자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2항” 관련)

K는 ‘**㉠** 용역’에 대해 2021. 9. 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공고에 주관적 지표 평가점수에 대한 산정기준과 회사 인지 표기 위반에 대한 감점(5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K는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에 대하여 회사 인지 표기 위반 감점(5점)을 적용하면서 공고대로 평가했을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데도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주관적 지표평가 총점이 아닌 평가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합계점수에 착오 적용하였고, 이후 2021. 10. 21. (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sup>3)</sup>문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2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L의 경우

### 1)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부적정(“1항” 관련)

L은 2022. 1. 1.부터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대상기간 중 **㉠** 용역 등 22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직접 실시하였다.

그리고 L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가격평가 및 정량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 공고에 평가항목별 점수산정기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L은 공고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방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성평가 점수산정을 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협상적격자나 협상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담당자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협상적격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2항” 관련)

L은 ‘**㉠** 용역’에 대해 2022. 2. 2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직접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팀-4922(2021. 10. 21.)호

실시하였으므로 공고에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L은 공고대로 평가하였을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데도 공고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착오 적용하였고, 이후 2022. 3. 25. ▲▲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4)문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2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계기관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K는 문답조사에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을 잘못된 건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고 사업부서 발주의뢰에 대하여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공고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협상적격자 선정을 잘못 처리한 건의 경우 감점 적용을 처음 하다 보니 공고상의 문구를 잘못 해석하여 감점적용 시 오류를 범했다고 답변하였다.

L은 문답조사에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을 잘못된 건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고 계약 외 업무도 많아서 하나의 계약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으며, 협상적격자 선정을 잘못 처리한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팀-1369(2022. 3. 25.)호

건의 경우 업무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공고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평가점수 산정에 오류를 범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를 최종산정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협상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담당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법다고 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고, 결과적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K, L의 행위는 진흥원 「취업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추진 담당자의 직상급자로서 협상적격자 선정 등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M, N은 「취업규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문책기준에 따른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협상적격자 선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진흥원 「취업규정」 제55조에 따라 「문책(경징계 이상)」 하고(문책)
- ②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계약담당자의 직상급자로서 협상적격자 선정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제안서 정성평가 합계점수 산정 부적정 현황 “생략”

# 부 천 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직원의 성과연봉과 경영평가 결과의 연계 필요

관 계 기 관 : ●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부천시는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68.5억 원을 출연금으로, 약 5.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표 1] 부천시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 “생략”

이에 진흥원은 부천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진흥원의 임금 및 보수체계는 직원들의 목표관리를 통해 결과를 보상에 반영하는 성과연봉제를 원칙으로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sup>5)</sup>, 성과연봉<sup>6)</sup> 및 부가급여<sup>7)</sup>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5) 기본급여의 연액

6) 전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금액

7)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3. 성과급 제도’에 따르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진흥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진흥원의 「보수규정」 제16조(성과연봉)에 따르면 진흥원의 경영성과와 직원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는 진흥원의 지속가능 경영(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경영성과(고객만족, 사업성과) 등을 지표로 하여 매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가 진흥원 임직원의 성과연봉(성과급)에 반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진흥원이 부천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게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는 진흥원이 경영평가 결과를 임원인 원장의 성과급에만 연계할 뿐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 중 진흥원을 제외한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표 2]와 같이 경영평가 결과를 임직원의 성과연봉(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

**[표 2] 부천시 출연기관의 성과연봉(성과급) 지급기준 비교 “생략”**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 및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직원들의 성과연봉(성과급)에 연계되도록 한 다른 출연기관 등과는 다르게, 진흥원 직원들은 진흥원장이 평가하는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받고 있는 등 출연기관별로 성과연봉(성과급)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2013년에 기존의 보수체계를 변경하여 명절휴가비와 개인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성과연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새로 도입된 성과연봉의 재원 구성 비율은 명절휴가비 80%, 개인성과 평가 성과급 20%이므로, 이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는 별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수체계 개편 검토(●과-6765, 2020. 09. 16.)” 등 과거 진흥원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보고 문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진흥원은 2013년에 직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 시 기존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는 ‘기본연봉’에 편입하고, ‘성과급’은 ‘성과연봉’으로 전환하면서 성과연봉 규모를 기본연봉 월액의 80% 수준(현재는 기본연봉 월액의 90% 수준)으로 책정하여 다른 출연기관과의 보수 차이를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진흥원이 현재 직원들의 성과연봉을 구성하는 재원의 대부분이 기존의 명절휴가비이므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 ①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의 보수(성과연봉)에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직원의 보수(성과연봉)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부 천 시

## 통 보

제 목 :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 ●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부천의 만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목적으로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진흥원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운영계획서(□팀-51, 2023. 1. 16.)에 따르면 위 사업의 내용은 만화제작, 만화이미지 제작, 캐리커처 제작, 만화강사 섭외 및 요청, 기타분야(마을행사 체험부스 등)로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진흥원의 예산서 등에 따르면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관련(캐리커처, 만화이미지 홍보물 등 제작)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액은 [표 1]과 같다.

### [표 1]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액 “생략”

이와 관련 2019. 12. 10. 부천시가 시행한 문서(●과-4208)에 따르면 만화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부천시는 만화산업 정책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진흥원은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등 시(市)와 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였고, 이에 캐리커처 지원업무, 공공홍보 만화제작 및 만화디자인 지원 등의 업무를 [표 2]와 같이 2020. 1. 1.부터 진흥원으로 이관<sup>8)</sup>하였다.

### [표 2]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이관업무내용 “생략”

8) 부천시는 ‘만화도시 브랜드 사업’을 이관하면서 관련 예산 3억 9,730만 원을 출연금에 증액하였고, 이후 사업명칭은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됨

한편 당초 부천시(●과)가 이관한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은 ‘만화도시 부천’이라는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캐리커처 제작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 및 국제 교류 도시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시정발전 유공(기여) 국내·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하되 기 제작자, 부천 공직자(부천 재·퇴직공직자), 기타 본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홍보 만화제작 및 만화디자인 지원사업’은 부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 부천시 주요 사업 및 행사, 기타 시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공홍보 만화제작 및 공공 및 민간시설물의 공간에 만화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부천시(●과)는 당초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이 이관될 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부천시가 의뢰하는 각종 만화도시 브랜드 사업 관련 업무가 당초 부천시가 이관하였던 ‘만화도시 브랜드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위 사업의 집행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부천시는 단순히 해당 사업과 예산을 이관하였다는 사유로 [표 3]과 같이 각 부서에서 진흥원에 캐리커처 제작 등을 의뢰하고 있었고, ●과는 이에 대해 당초 사업 취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캐리커처 제작 대상 및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승인<sup>9)</sup>하였으며, 진흥원 또한 캐리커처 제작 의뢰 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부천시가 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캐리커처 등을 제작해주고 있었다.

9) 부천시 각 부서는 진흥원에 캐리커처 등 제작을 의뢰하면서 ●과를 공문의 수신자 또는 협조자로 함께 지정하여, 마치 ●과의 검토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시행함

[표 3] 각 부서별 캐리커처 등 의뢰 현황 “생략”

또한 진흥원의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보완계획’ (□탐-1167, 2022. 7. 15.)에 따르면 민간단체 및 타 지역 의뢰 사업은 의뢰처 예산부담으로 진행되나, ‘단, 부천시 요청 및 원장 승인에 따라 진흥원 예산부담이 가능하다’ 고 되어 있어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의 예산집행 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초 부천시가 해당 사업을 이관하였던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과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비하고 지도·감독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 사업’ 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목적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부 천 시

## 주의(훈계 등) 요구

제 목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당 분리발주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규정」에 따라 매년 부천국제만화축제(이하 “만화축제”라 한다)를 개최하고 있고, 2022년에는 만화 관련 대학과 기업 참여를 위해 [표 1]과 같이 「부천국제만화 축제 사 프로그램」(이하 “사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 [표 1] 사 프로그램 주요 내용 “생략”

사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① 대학관 및 기업관 공동부스 운영, ② 학생작가 작품 피칭쇼 및 상담회 운영, ③ 집담회 및 특강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아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하 “아 용역”이라 한다)과 「부천국제만화축제 재 용역」(이하 “재 용역”이라 한다) 관련 계약을 (사)◇◇ 등과 체결하고 부스에 설치할 전시물의 디자인을 의뢰 하였다.

### [표 2] 사 프로그램 추진내역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항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의 ‘5.분할계약의 금지’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만화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건의 용역계약으로 나누어 발주를 하면서 각각의 계약을 대상으로 2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였는데 [표 3]과 같이 만화와 관련이 없는 업체<sup>10)</sup>의 견적을 비교 견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표 3] 용역 계약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 현황 “생략”

또한 진흥원은 만화축제 시 행사장 내 ‘부스 설치’는 「**㉡** 용역」<sup>11)</sup>으로 추진하면서 이 부스에 설치되는 ‘전시물 디자인 및 출력’은 [표 4]와 같이 ‘**㉠** 용역’과 ‘**㉡** 용역’에 각각 반영하였고, 이 중 ‘**㉡** 용역’의 부스 전시물은 (사)◆◆의 회원인 O에게 별도로 디자인을 의뢰(비용 300만 원 별도 지급)하고,

10) (주)△△는 서비스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주)●●은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업으로 업종(업태) 등록

11) 진흥원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제6회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을 함께 추진하면서 행사를 기획·운영할 용역계약을 별도 추진함

0이 디자인한 전시물의 출력만 ‘㉠ 용역’에 포함시키는 등 단일의 ‘전시물 디자인 및 출력’ 과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표 4] ‘㉠ 프로그램’ 업체별 과업내역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만화계와 협력관계 강화와 부천국제 만화축제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하여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사)◇◇와 (사)◆◆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웹툰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만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기 프로그램과 직·간접적 당사자들인 (사)◇◇와 (사)◆◆ 등의 참여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 프로그램’은 일반 행사기획사에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어 일반 행사기획사 등에게 견적을 요구하였으나, 일반 행사기획사는 단순히 행사 운영만 할 뿐 사후관리나 만화계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부문이 있어 (사)◇◇와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진흥원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2조(계약원칙) 및 제5조(관계법령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기 프로그램에 만화계의 요구사항 수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용역 과업에

반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경쟁의 방법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거나, 과업 수행을 위해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경쟁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는데도,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추진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신분상 주의)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상 추천 후보자 심의 누락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규정」(이하 “축제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국제만화축제(이하 “만화축제”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축제 운영규정 제15조(시상 종류) 및 제16조(선정)에 따르면 매년 만화축제 개최 시 만화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만화 발전에 공이 있고 창작활동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만화가를 선정하여 ★★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진흥원은 2022년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상 선정 및 시상 계획<sup>12)</sup>”에 따라 ★★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만화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만화인 네트워크 행사’에서 시상하기로 하면서, ★★상 선정은 [그림 1]과 같이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위원들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 [그림 1] ★★상 선정 절차 “생략”

이후 진흥원은 ◎◎ 단체, (사)◆◆, (사)◇◇ 등 만화관련 10개<sup>13)</sup> 단체에

12)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상 선정 및 시상 계획(■팀-553, 2022. 8. 5.)

★★상 선정위원 1명과 ★★상 후보작가 1명을 추천 요청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각 협회나 단체 등으로부터 ★★상 선정위원과 후보작가를 추천받은 경우 추천 대상이 심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2년도 ★★상 선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7개 단체로부터 ★★상 선정위원과 후보작가를 추천받았는데 [표 1]과 같이 (사)◆◆에서 추천한 선정위원과 후보작가를 누락하여 당초 계획과 맞지 않게 선정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상은 추천받은 후보작가 5명<sup>14)</sup>을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상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1] ★★상 선정위원 및 후보작가 추천현황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상 선정위원회’ 구성은 만화작가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사)◆◆는 만화작가와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자격이 없었으며, 다만 (사)◆◆에서 추천한 작가 1명을 실기하여 누락한 것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의 주장에 따르면 진흥원은 각 추천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하였어야 하나, 2022. 8. 9. 추천요청 당시 이러한 구분 없이 만화 관련 10개 협회·단체에 공통으로 ‘★★상 선정위원 1명 및 ★★상 후보작가 1명 추천’을 요청(☐팀-565)하였으며, 이제서야 (사)◆◆는 만화작가와 관련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상 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없

13)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14) ★★상 후보자를 7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였으나 (사)◆◆에서 추천한 1인을 누락

으므로 추천위원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설사 (사)◆◆가 선정위원의 추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흥원의 추천요청 공문에 따라 2022. 8. 25. (사)◆◆ 추천서를 접수한 당시 추천 권한 유무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어야 했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상 수상 후보자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신분상 주의)

# 부 천 시

## 통보(시정완료)

제 목 :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투자성과 분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7년에 만화 중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스 창업초기 디지털콘텐츠 투자조합 등 3개의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해당 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하였다.

이후 진흥원은 위 3개 투자조합의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자를 하였고, 감사일 현재 각 투자조합의 운영 현황은 [별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콘텐츠투자조합 투자 현황”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은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매년 부천시로부터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운영비<sup>15)</sup>를 출연 받고 있으므로, 진흥원이 출자한 각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성과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천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이 각 투자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의 운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표 1]과 같이 3개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성과에 따라 회수되는 분배금을 향후 재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sup>16)</sup>로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 등 수익성이 낮은 예금계좌로 운용하고 있었다.

**[표 1] 문화콘텐츠투자조합 투자성과 분배금 운용 현황(2023. 4. 3. 현재) “생략”**

반면, 위 3개 투자조합의 2022년 말 영업보고서 등을 점검한 결과, 각 투자조합은 [표 2]와 같이 미(未)투자자산을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 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sup>17)</sup>) 등 보다 수익성이 높은 예금계좌로 운용하고 있었다.

**[표 2]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미(未)투자자산 운용 현황(2022. 12. 31. 현재) “생략”**

그리고 진흥원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을 통해 문의한 결과, 감사일 현재 ☒☒은행은 ‘ㄱ 정기예금’이라는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금융상품은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약 3.37% 상당의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최근 3년 부천시 출연금: 2021년 6,266,000천 원, 2022년 6,387,903천 원, 2023년 10,329,724천 원

16) 실제 각 투자조합별로 최초로 분배금이 회수된 2020년, 2021년 이후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4월 현재 재투자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2023년 7월 결성 목표)을 추진 중

17)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실제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함(출처: 두산백과)

이에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성과 분배금 계좌를 대상으로 2023. 1. 1. 부터 2023. 3. 31.까지 3개월간 단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해 본 결과, 진흥원은 [표 3]과 같이 투자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분배금을 운용하여 약 13,398천 원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표 3] 투자성과 분배금 계좌에 대한 이자수익 시뮬레이션 결과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분배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며, 향후 펀드 투자금 운영 시 진흥원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23. 4. 18.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분배금 1,991,605,458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콘텐츠투자조합 투자 현황 “생략”**

# 부 천 시

## 개선요구

제 목 : 징계 및 훈계처분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인사 규정」, 「취업 규정」, 「취업 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하고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된 주의·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훈계·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다.

### 1. 징계처분 시 징계처분기준 미흡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2.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업 규정」 제52조 및 「취업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징계감경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징계 감경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 처분하는 기준도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 2. 직원의 경고 등 신분상 처분 규정 개선

진흥원은 「취업 규정」 제62조(직원의 경고 등 처분)에 따라 임직원의 비위나 잘못이 징계의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경고·훈계·주의로 구분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으며 경고는 임원에게, 훈계 및 주의는 직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의 경고 등의 처분은 서면에 의하며, 1년 이내에 2회의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진흥원은 「취업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에 이르지 않는 임직원의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서면으로 직원의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취업 규정」등 내부규정에 처분 사유·절차(방법)·효력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하고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기간(2021. 9. 1. ~ 2023. 3. 31.) 동안 직원들에 대한 훈계 등을 처분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훈계 13명(22건), 주의 17명(22건) 등 총 30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면서, [표]와 같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5명에 달하는 데도, 타 기관<sup>18)</sup>과 다르게 징계 처분 임의규정을 두어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①재단: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훈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징계 처분한다.

특히, 진흥원은 M의 경우 부천국제만화축제라는 동일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예산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행위 2건에 대하여 동일한 일자(2022. 12. 30.)에 훈계 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가중 처분을 검토하지 않는 등 훈계 처분에 따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표] 2회 이상 훈계 등 처분 내역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징계에 대한 감경 및 가중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인적조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점검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처벌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진흥원은 징계 양정기준에 이르지 않은 임직원의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도 보다 명문화된 처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하여 훈계 처분에 대한 경각심과 훈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취업규정」 및 「취업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징계 양정기준에 이르지 않는 임직원의 비위나 잘못과 관련하여 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부 천 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 중(2021년 9월 ~ 2023년 3월) 총 28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다.

### 1. 사전 예비명부 구성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고, 정성평가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절차를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스팀으로 창작계, 산업계 등 분야별로 평가위원 수(총 7명)를 명시하여 예비평가위원 목록을 요청하고 스팀에서 심사위원의 예비평가위원 목록 총 63명(1~ 3순위 목록, 각 21명)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up>19)</sup>을 통해 추천하여 사업부서로 회신하며, 각 사업부서 담당은 스팀으로부터 받은 예비평가위원 목록<sup>20)</sup> 기준으로 참석 가능한 위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의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입찰참가자들이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평가위원 수만큼 추천하게 하여 다빈도 순(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절차(예시)> “생략”

따라서 스팀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추천하여 사업부서로 회신하는 예비평가위원 목록의 경우 시스템에서 추출된 대상자들로서 본인들이 예비평가위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부서는 스팀으로부터 예비평가위원 목록을 회신받으면 이들에 대해 제안서 평가 참여 의사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하기 전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대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기간(2021. 9월 ~ 2023. 3월) 동안 협상에 의한

19) 진흥원에서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규칙」에 따라 전문가 명단(Pool)을 등록하여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

20) 스팀에서 예비평가위원 목록(1~3순위 목록 각 21명, 총 63명)을 받은 후 1순위 목록부터 순차적으로 참석여부 확인

계약으로 체결한 28건의 계약 건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표 1]과 같이 13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들이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한 이후 예비평가위원 목록을 요청하거나 회신받는 등 사전에 평가위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들은 평가위원이 매칭되어 있지 않은 고유번호만 추첨하게 되었고, 이미 입찰참가자들의 추첨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진흥원은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1] 예비명부 사전 미구성 현황(추첨 이후 예비평가위원 목록 요청 등) “생략”**

그리고 [표 2]와 같이 ‘2021년 □ 용역’ 등 13건의 경우 슝팀에서 회신한 예비평가위원 목록(1~3순위 목록 각 21명)에서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확정하여야 하나 참석여부만 확인한 채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표 2]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 미확정 현황 “생략”**

또한 [표 3]과 같이 11건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에 대해 전결권자인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거나 입찰참가자의 평가위원 추첨 이후 결재를 받는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예비명부 결재 미이행 현황 “생략”**

##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sup>21)</sup> 제3조

21) 진흥원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2조 제3항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세부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 자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진흥원은 이를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제4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천한 번호의 다빈도 순(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된 자를 평가 위원으로 정해야 하고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20% 이내 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찰참가자의 추천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평가위원 개인사정 등에 의한 불참 등을 사유로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위원을 추가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표 4]와 같이 ‘**㉠** 용역’ 등 6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 시 다빈도 추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불참 등을 사유로 다빈도 추천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등 낙찰자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변경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였다.

[표 4] 제안서 평가위원 변경 부적정 현황 “생략”

### 3. 평가위원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제안서 평가

행정안전부는 2021.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공문<sup>22)</sup>을 시행하면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위원 최소인원수인 7인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진흥원은 [표 5]와 같이 ‘**㉡** 용역’ 등 9건에 대하여 평가위원

2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58(2021. 09. 13.)

최소인원수 7인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등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표 5] 최소인원수(7인) 미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생략”

#### 4.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운영 규정 마련 소홀

진흥원의 감사대상 기간 중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1인 견적제출) 111건을 제외한 총 51건의 계약 건 중에서 [표 6]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28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결과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 10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한 건이 74.5%에 해당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진흥원 계약체결현황(2021. 9. ~ 2023. 3.) “생략”

한편, [표 7]과 같이 부천시(감사담당관)는 진흥원에 대해 2019년, 2021년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 제출자의 추천으로 선정된 평가위원이 부적정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표 7] 부천시 종합감사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처분요구 내역 “생략”

따라서 진흥원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비율이 높고 종합감사 시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1년 종합감사 이후 2022. 2. 25. ‘2022년 계약업무개선 계획<sup>23)</sup>’ 을 수립하면서 개선사항으로 제안서 접수 전 스팀으로부터 예비심사

위원 목록을 받은 후 유선 연락을 통해 참석이 가능한 예비심사위원 21명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만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을 뿐 세부 운영 규정 마련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동일 유사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자 또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가 공정하고 통일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경영평가 실적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부천시의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2022년도(2021년 실적)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이하 “경영평가 편람”이라 한다)의 기준·방법과 「2022년도(2021년 실적)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영실적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제출자료 부적정

경영평가 편람 [표 1]에 따르면 2021년도(2020년 실적)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적은 2021년 이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2021년에 이행 완료한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 [표 1] 2022년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p28) “생략”

그런데 진흥원은 2021년도(2020년 실적)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의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자료 제출 시 “2021년 부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39건)”을 제외

하고 “2021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5건)” 만을 ‘이행 목표과제 수’ 로 작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평가에서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이행률 100%로 만점(1점)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진흥원의 3년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자료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2020년도(2019년 실적)의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시에도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으로 부천시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작성 현황 “생략”

## 2.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미준수

진흥원은 법 제32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공시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시항목별 내용을 작성하여 시기별로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해당연도의 경영성과 등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영공시와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클린아이시스템” 이라 한다)에 게시하는 통합공시로 구분한다.

공시기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총괄자 및 감독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 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경영평가에서는 관련 법 및 공시기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공시항목, 자료입력기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공시항목을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은 공시하였으나 공시일자 및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정도”,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공시되지 않았는데도, 진흥원은 경영평가 중 경영공시 지표 실적 보고서에 관련 법 및 공시기준에 따라 모두 경영공시한 것으로 작성하여 달성을 100%로 지표 만점(0.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경영공시 항목 및 공시 현황 “생략”**

더욱이 공시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통합 공시나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로 대체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진흥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홈페이지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면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 사이트 클린아이시스템으로 연동되게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시내용에 기준일만 기재되어 있어 통합공시 항목의 공시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2022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3월 말 까지 제출하고 현장평가에 필요한 자료(결산서, 내외부 감사 결과 등)를 추가로 전자 장치(USB)에 담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2022년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서의 ‘진흥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지표 평가결과’의 경우 진흥원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자료(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만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경영평가 주관부서(○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영공시’의 경우 진흥원은 2022년 개정된 「공공기관 알리오 통합 공시 기준」과 2023년 경영평가 사항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중 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미공시항목은 클린아이시스템으로 연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시기준 등에 의해 정해진 공시항목과 절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표 3]과 같이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도 실적보고서에 모든 공시항목을 경영공시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진흥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매년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경영평가 편람을 준수하여 경영실적보고서 및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계약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인사조직지침”이라 한다) 및 진흥원 「정관·인사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계약직 등의 채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 ‘다.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시간제계약직 취업 규칙」 제5조(채용방법) 및 「계약직 관리 규정」 제9조(채용방법)에 따르면 서류 및 면접시험에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11조(채용시험위원)에 따르면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20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계약직 채용 지원서 접수 현황 및 전형 진행 건의’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서류 적격(適格) 여부 심사로 내부위원<sup>24)</sup>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진흥원은 2022년 채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직 채용을 공고하였고,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다.

**[표 1]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 대상자 “생략”**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 계약직 서류전형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각 시험위원이 서류심사 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관련 규정이나 당초 보고문서 내용과 다르게 [표 2]와 같이 평가요소별 세부 기준 배점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채점방식으로 심사하였다.

**[표 2]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계약직 서류전형 채점표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용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신분상 주의)

24) ■실 □팀장, ●실 ◆팀장, □실 ●팀장

# 부 천 시

## 주의(훈계)요구

제 목 : 유학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매년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진흥원 「보수규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진흥원에 소속된 직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하며, 근속연수의 산정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다만, 휴직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직원이 업무상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학업을 사유로 유학휴직하였을 때는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퇴직연금도 적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개인적인 학업을 사유로 2020. 12. 1. ~ 2021. 12. 31. 기간 동안 유학휴직한 P에게 휴직기간(396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P의 휴직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2021. 6. 29.(상반기)과 2021. 12. 30.(하반기)에

총 퇴직연금 2,965,000원을 적립하였고, 이후 P는 2022. 1. 1. 퇴직 시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를 완료(2023. 4. 27.)하였고, 퇴직연금규약 변경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건 휴직자에 대한 근속연수 및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 행정해석<sup>25)</sup>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보수규정」 ‘제5장 퇴직연금’ 제27조 제3항에서 「취업규정」 등에서 명시한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 휴직, 병역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학업을 사유로 유학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흥원 「보수규정」 상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 특별한 미비점이 없는데도, 진흥원이 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하여 「보수규정」 또는 퇴직연금규약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보수규정」에 따라 휴직자에 대한 퇴직

25)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94(2010. 6. 11.)

연금 적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유학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부 천 시

## 개선요구

제 목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제외대상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를 초과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통상임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표 1]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금액 “생략”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 인건비’ ‘(2) 수당’에 따르면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sup>26)</sup>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은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는 관계로 기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20. 1. 1. 이전까지는 직급과 직책을 연동하여 일정 직급에 도달한 자가 일정한 직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0. 1. 1.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관 운영의 유연화와 수평적 조직운영의 변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직위는 매니저로 일원화하고 부서장의 직책은 실장, 팀장으로 구분하되 1~6급 직원 중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원장이 부여하고, 부서장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원장을 비롯한 직원 중 관리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직책)가 누구인지,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0. 1. 1.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직급, 직책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존 「보수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원장과 1급 직원을 제외하고 있었으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

26) 근기 01254-5592(1987.4.6.)

그 결과, 1급 E의 경우 2021년 9월 관리자 직책에 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휴일근로(24시간)를 했다는 사유로 휴일근무수당 1,082,030원을 지급받는 등 직급 또는 직책별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를 추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부 천 시

## 통 보

제 목 : 유급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진흥원 「취업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일 및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② 경비’ 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의 유급휴일을 운영하면 그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급휴일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유급휴일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해당 금액만큼 기관의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유급휴일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진흥원은 「취업규정」 제18조(유급휴일)에 따라 ①주휴일 ②법정 공휴일

③근로자의 날 ④진흥원 창립기념일(12월 4일) ⑤기타 진흥원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진흥원은 상위 지침에 반하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모든 직원에게  
유급휴가 1일을 더 부여<sup>27)</sup>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창립기념일을  
연차휴가 1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규직 44명 6,263,993원, 계약직 2명  
208,534원 및 공무원 11명 994,400원 총 57명 계 7,466,920원<sup>28)</sup>을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그 해당 금액만큼 기관 경영에 부담을 초래  
하였다.

## 2. 경조사 휴가일수 과다 적용

진흥원 「취업규정」 제23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직원은 본인의 결혼 등 경조  
사유가 발생한 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조사 휴가일수는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타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1] 진흥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 부여 현황 “생략”

그런데 [표 2]와 같이 진흥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공사, 부천시 다른 출연기관<sup>29)</sup> 등과 비교했을 때 진흥원은 본인 결혼

27) 다른 출연기관들은 창립기념일 등 별도 유급휴일 없음

28) 2022년 12월 진흥원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적용

29) ㉠재단, ㉡재단, ㉢원

휴가 2일 초과,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 초과 부여, 부모·조부모 사망 시에도 2일을 초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및 타 기관에서는 부여하지 않는 증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5일 부여하고 있는 등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

[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운영 및 경조사휴가 일수에 대하여 진흥원 노동조합들과 합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도록 「취업규정」 제18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부 천 시

##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 「취업규정」 및 「취업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에 규정하고 임직원의 출·퇴근, 휴가, 휴직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 1.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진흥원 「취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직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 시작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상황부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조퇴나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조퇴(지각, 외출 포함)할 경우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경위서를 징구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시간제계약직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직의 근무상황 관리는 「취업규정」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단 계약직 직원의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부여시간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상적 복무 여부, 개인 휴가 신청 및 승인의 적정성 여부, 출장 허가 및 복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위서를 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당시 주의 등의 처분을 하는 등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기간(2021. 9. 1. ~ 2023. 3. 31.) 동안 이루어진 전 직원 복무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2021년 11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근태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른 처분<sup>30)</sup>을 하였으나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근태점검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2022년의 연간 근태상황을 일괄로 보고<sup>31)</sup>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2. 휴직자 관리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직원의 인사’ ‘⑤보직 관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휴직 중인 직원의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되는 금지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취업규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진흥원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30) 2021년 11월 근태보고(○팀-5726, 2021.12.08.)

31) 2022년 근태 총괄보고(○팀-692, 2023.2.8.)

그리고 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르면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인사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휴직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휴직자는 휴직 중 복무상황 신고서를 매 반기말까지 인사부서장에게 제출<sup>32)</sup>하여야 하고, 인사부서장은 매 반기별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휴직실태를 정기 점검한 후 보고(1월, 7월)하되 필요시 수시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감사대상기간(2021. 9. 1. ~ 2023. 3. 31.) 동안 휴직한 14명에 대하여 복무상황 신고 및 휴직실태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표 1]과 같이 휴직 전 교육은 2명, 복무상황 신고서 확인은 1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휴직실태 점검은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 1] 휴직자 복무관리 현황 “생략”

### 3. 휴가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진흥원 「취업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는 [표 2]와 같이 연차 휴가·근속휴가·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병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은 휴가 또는 병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32)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하였을 때 그 시기의 보고서를 생략할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할 때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원 직원은 휴가 사용 시 규정상 휴가 본연의 목적에 따라 신청한 후 부서장(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부서장(팀장)은 규정과 다른 목적의 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 사용을 반려하고 정당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 2] 「취업규정」상 명시된 휴가 및 사용 조건 “생략”**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 직원의 감사대상기간(2021. 9. 1. ~ 2023. 3. 31.) 동안 휴가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특별휴가(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포상휴가, 휴일대체휴가 등에 해당하는데도 공가로 처리한 건이 155건, 진흥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사) 활동 관련 휴가를 공가로 처리한 건이 88건 등으로 전체 공가 처리 626건 중 243건(약 38.8%)이 실제 휴가 내용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진흥원은 다수의 직원이 휴가 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공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휴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휴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진흥원 직원의 공가 사용 현황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 근태 관리 철저 및 휴직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근태관리 시스템(ERP SYSTEM)을 정비하여 휴가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 ① ( “1항” 과 관련하여) 「취업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근태점검 실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 “2항” 과 관련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취업규정」 제47조에 따라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휴직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 “3항” 과 관련하여) 「취업규정」제19조에 명시된 휴가 대상과 휴가 일수를 명확히 운영하는 한편, 직원이 정당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부 천 시

## 시정요구

제 목 :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진흥원 「취업규정」 및 「취업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 연도말 연가보상일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진흥원 「취업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때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 연차휴가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사항」<sup>33)</sup>을 시달하면서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행정해석을

33)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시달」(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변경하였다.

**[표 1] 약정 육아휴직기간 등의 휴직기간 산정방법 “생략”**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변경 전에는 약정 육아휴직 등을 결근으로 보아 연차 휴가를 산정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을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결근과 다르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행정해석이 변경된 이후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식<sup>34)</sup>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이 복직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식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적용한 후 실제 근로 의무가 존재하는 달 중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표 2]와 같이 직원 4명에게 최소 3일에서 최대 9일까지 연차 일수를 과소 적용하였다.

**[표 2]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현황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착오 적용하였음을 인정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약정(육아·질병)휴직 후 복직한 소속 직원 Q 등 4명에게 착오 적용한 연차 일수를 정당한 연차 일수로 정정 적용

34) 15일(가산휴가 있을 경우 가산휴가 포함)×((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연차 일수 적용 시 「2021년 연차휴가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사항」(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일수가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자체감사제도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흥원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감사인의 직무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보고서·통보서 작성 및 그 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감사사항, ②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③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④ 감사의 범위, ⑤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천시는 ‘2021년 종합감사’를 통해 진흥원이 자체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진흥원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도모를 위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사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매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의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의 2022년도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부서인 ♣팀은 ‘2022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sup>35)</sup>하였으나 [표]와 같이 ‘복무 및 인사분야’는 공직기강 감찰 외에 인력채용 및 친·인척 고용현황, 출장 및 휴가 사용현황 등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회계분야’의 경우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감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패방지분야’의 경우 외부강의 점검만 1회(1분기) 실시한 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여부 점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업무를 태만히 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표] 2022년 자체감사 실시 현황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자체감사 규칙」 및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자체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5) “2022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계획” (♣팀-426, 2022. 3. 3.)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진흥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이라 한다)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sup>36)</sup>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표 1]과 같이 사례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 [표 1]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생략”

그리고 진흥원 행동강령 제20조 등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36)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외부강의 등<sup>37)</sup>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원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일시·사례금 등을 포함한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행동강령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감사 시 진흥원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기고”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4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S 등 2명은 [표 2]와 같이 “기고”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 이상으로 사례금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 외부강의(기고)에 대한 사례금 초과 수령 현황 “생략”**

또한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사례금 일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R 등 5명은 사례금 신고 시 국세청 기타소득 명세서와 다르게 사례금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 **[표 3]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과소 신고 현황 “생략”**

더욱이 R 등 4명은 [표 4]와 같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37) 진흥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이란 강의, 강연, 기고,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발표, 심사, 평가, 자문, 방송출연 등 초청되거나 위원으로 등록되어 전문 지식 전달 및 의견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등을 하면서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외부강의 등 초과시간 사전 미신고 내역 “생략”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계기관 의견

진흥원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과소 신고”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에서 수령한 사례금 중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로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례금액을 과소 신고한 R 등 4명의 “국세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⑬비과세 소득’이 0원으로 확인되었고, 진흥원「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사례금 항목에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상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진흥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S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초과금 미신고”와 관련하여 원고 집필은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를 제공받은 것이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가 기고<sup>38)</sup>한 “**㉠** 용역”은 **㉠**원 연차보고서로 2022. 3. 7. **㉠**원으로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21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추진사업 분야’에 대한 집필을 의뢰<sup>39)</sup> 받아 작성한 원고로서 자신의 직무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38)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일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며, 정부간행물<sup>40)</sup>로 등록된 간행물에 기고한 것으로 진흥원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신고의 의무도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S는 2022. 8. 2.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제출<sup>41)</sup>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고 원장에게 승인받았으면서도, 이제서야 본인의 기고(원고집필)가 외부강의 등이 아니며 정당한 대가의 금품이라는 S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상기의 ‘원고작성’이 정당한 대가의 금품을 받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적정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과 겸직에 대한 신청 및 허가를 적법하게 하시기 바라며, 외부강의 등 경우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20조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령하거나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월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례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외부강의 등 신청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신분상 주의)

39) “☐ 용역 원고지필 의뢰” (☐팀-470, 2022. 3. 7.)

40)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234-10

4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2월~8월” (☐팀-1667, 2022. 8. 3.)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부천만화대상 수상 부문 변경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부천만화대상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부천만화대상(이하 “만화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수상작품별로 시상하고 있다.

구 「부천만화대상 운영규칙」(2023. 3. 10. 규칙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시상내역에 따르면 만화대상의 시상은 [표 1]과 같이 대상과 만화부문 3개 상(우수만화상, 해외작품상, 신인만화상), 학술상으로 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대상 상금만을 지급하고 부문별 상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표 1] 「부천만화대상 운영규칙」 [별표 1] 시상내역 “생략”

한편, 진흥원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외 우수작품 조명을 위해 2021. 6. 4. 규칙을 개정하면서 [표 2]와 같이 독자인기상을 폐지하였다.

### [표 2] 규칙개정에 따른 시상내역 비교 “생략”

따라서 진흥원은 당초 위 규칙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독자인기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상해서는 안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 다른 부문별 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도 안된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2년 부천만화대상 운영방향 검토를 위해 2022. 1. 16.

만화대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만화대상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규칙의 내용과는 다르게 독자인기상을 시상하는 방안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진흥원은 2022. 2. 10. 「2022년 제19회 부천만화대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한 독자인기상을 시상부문에 넣으면서 상금은 500만 원으로 하고, [표 3]과 같이 대상 수상자와 독자인기상, 해외작품상, 신인만화상 수상자가 중복되어도 시상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표 3] 진흥원의 '2022년 만화대상 운영계획' 시상 기준 "생략"

그 결과 진흥원은 2022. 4. 22.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작가 T)'가 2022. 5. 23. ~ 6. 13. 기간 동안 Bicof<sup>42)</sup> 홈페이지 내에서 진행된 투표를 통하여 독자인기상으로 선정되자 해당 작가에게 대상과 독자인기상 상금 총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부천만화대상 자문위원회 결과가 반영된 부천만화대상 운영계획에 맞춰 「부천만화대상 운영 규칙」을 개정했어야 했으나, 부천국제만화축제 시 수상작품 전시 등을 위해 수상작품 선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규칙 개정을 하는 것을 누락 실기하였으며,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통해 실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향후 부천만화대상 추진 시 「부천만화대상 운영 규칙」을 위반하여 수상 부문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2) 부천국제만화축제 영문표기(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약칭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기부금품 모집·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칙」 등에 따라 부천국제만화축제 기부금품과 협찬물품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이하 “만화축제”라 한다) 개최를 위해 약 9,064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과 협찬물품을 모집하였다.

### [표 1] 제25회 만화축제 기부금품·협찬물품 모집 결과 “생략”

진흥원은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2021. 12. 31.)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과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2021. 10. 25.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금고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금고 지정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두 차례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진흥원은 금고 지정 입찰에 단독 응찰한 (주)☐☐은행(☐☐지점)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안전의 심의를 위해 2021. 12. 9.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1. 12. 21. (주)☐☐은행(☐☐지점)과 금고업무 취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 진흥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표 2]와

같으며, 이 중 평가항목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에 대해 (주)☒☒은행(☒☒지점)은 금고지정을 대가로 협약기간인 2022. 1. 1. ~ 2025. 12. 31.(4년) 기간 동안 만화 축제 시 매년 400만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2] 금고지정 평가기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2002. 5. 31.)에 따르면 ‘금고지정 약정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칙」 제3조(정의)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진흥원에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및 현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은행(☒☒지점)이 금고 지정을 대가로 매년 협력사업비 400만 원을 출연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지난 3년간 진흥원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금고 지정을 위한 협력사업비로 (주)☒☒은행(☒☒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을 매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다.

**[표 3] 금고 협력사업비 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수령된 협력사업비는 축제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향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진흥원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기부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품 등과 관련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교육강사 선정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고 한다)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업) 제12호 ‘만화도시화사업 및 지역 활성화 거점공간 운영’ 에 따라 부천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화교육과 ☒☒ 참여 학생의 졸업앨범용 캐리커처를 제작해주는 ‘☒☒’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 2023년 운영계획에 따라 2023. 2. 1. 교육강사 및 캐리커처 작가 모집 공고를 하였고, 공고문에 따르면 ‘교육강사’ 모집은 [표 1]과 같이 교육강사 심사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자 모두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되 신청자가 선정자의 1.5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강사선정은 선정위원들이 평가한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항목 고득점자(최고점, 최하점 제외)를 최종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 [표 1] 교육강사 심사 및 선정기준 “생략”

따라서 진흥원은 ‘☒☒’ 교육강사 공고문에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내용이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부 검토만

으로 서류 미제출자 등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되고, 당초 공고한 내용대로 교육강사 신청자가 선정자의 1.5배수 이상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3년 ☒☒ 교육강사 모집 선정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20명을 모집하는 교육강사 분야에 1.5배수 이상인 33명이 신청하였으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신청자 중 4명에 대하여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의 사유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29명만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합 진행하였다.

더욱이 진흥원은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서류·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하면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 [표 2]와 같이 심사방법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러한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또는 공지 없이 2023. 3. 9. 기관 홈페이지에 ‘2023 ☒☒ 교육강사 선정 면접심사 대상자 공고 건’에 따라 면접대상자 명단만 공고하였다.

**[표 2] 서류·면접 통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육강사 선정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향후 ☒☒ 교육강사 선정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교육강사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신분상 주의)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 및 진흥원의 「정관」,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 세출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 ‘IV. 행정사항’에 따르면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표준 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으며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계획의 정확한

예측 등 적절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지출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 등은 ‘사무관리비’ (201-01)로 편성하고,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 (301-10)으로, 정원외의 업무 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등은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01-04)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 수선유지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 (214-05)로,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 (401-01) 등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예연구원 실습수당, 정수기 유지보수, 만화박물관 진입로 정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표 1]과 같이 행사실비보상금, 수선유지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표 1] 세출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내역 “생략”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15조, 제24조에 따르면 원장은 예산성립 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지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이·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이나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은 관내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의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의 만화 문화체험을 위해 편성된 ‘**☐** 용역’ 예산을 [표 2]와 같이 ‘**☐☐**병원 벽화조성 사업’에 3,000천 원, ‘**☐☐**병원 어린이병동 만화이미지 조성사업’에 4,829천 원 집행하였다.

#### [표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역 “생략”

이에 따라 출연금 사업비가 적절한 심의·승인 절차 없이 당초 사업 취지 및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sup>43)</sup>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43)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단위로 함

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원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월조서를 작성하여 수입지출 예산안과 함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회계연도 폐쇄 전 당해 회계연도 내 발생한 업무 중 미집행한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표 3]과 같이 직원의 실수로 지급하지 못한 **◆◆ 총괄감독의 업무수행 경비(11월, 12월분)**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집행했어야 할 **◆◆ 작가원고료 및 도록 제작비**를 이월조치 아니한 채 2023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였다.

[표 3] 202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내역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부 천 시

## 주의요구

제 목 : 재단 회계 결산 처리 미흡

관 계 기 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용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정관」 및 「재무회계 규정」 등에 따라 재단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 1. 금융상품의 계정과목 및 유동성 분류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고, 투자자산은 장기성 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 장기적인 투자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진흥원이 [표 1]과 같이 정기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본재산 1,000만 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일인 2022. 12. 31.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고,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이므로 유동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하는데도 진흥원은 2022년도 결산에 위 정기에금을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그 결과 해당 금액만큼 유동자산이 1,00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비유동자산(투자자산)은 과소 계상되었다.

[표 1] 기본재산의 운용 내역 “생략”

## 2. 투자자산 평가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7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1년과 2022년 결산 시 문화콘텐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매도가능증권)을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순자산조정(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투자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진흥원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225,804천 원 과대계상되었고,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239,152천 원 과소계상되었다.

### [표 2] 문화콘텐츠투자조합 출자금 관련 회계처리 “생략”

## 3. 무형자산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5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27조에 따르면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혜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중 ‘공익목적사업비용 - 사업수행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 용역비의 경우 만화산업 관련자들에게 다양한 만화전문 정보(기획기사, 칼럼, 인터뷰 등)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비용으로 계상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1년과 2022년 결산 시 ☐ 용역비 각각 94백만 원, 114백만 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무형자산상각비를 상각하여 당기순이익이 각각 75백만 원, 91백만 원 과대계상되었다.

[표 2] ☐ 용역비 회계처리 오류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재단 회계 결산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앞으로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회계결산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